



# 의왕초평 A-3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진여세대 추가입주자모집공고

■ 공급위치 : 경기도 의왕시 광진말1로 11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 25-10)  
 ■ 공급대상 : A-3블록 981호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23세대 (전용면적 55㎡)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의왕시”)에 거주하는(주민등록표등본 기준) 신청자격요건을 갖춘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다만, 소득 및 자산요건, 과거 특별공급 당첨여부, 청약저축 가입여부는 불문하며 계약체결 시 특별공급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일반 당첨자로 관리)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2020.12.31.) 및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2023.09.08) 이후 해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및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입주가 완료된 단지**로, 계약자는 **계약 시에 계약금 10%,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잔금 90%를 납부하고 입주**하셔야 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이하 같음)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각각 공급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처리 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해약세대가 선택한 읍선내역으로 시공**되었으며, **당첨된 동·호수 세대의 발코니 확장, 추가선택품목 등의 설치 및 변경,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는 불가하고 **해약세대의 선택사양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5~8 참고)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형별(055.0000A, 055.9800B)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하신 주택형(055.0000A, 055.9800B) 내에서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을 통해 동호수가 배정(신청 자격별·동별·층별·타입별(55A-1,55A-2,55A-3)·향별·층세대 구분 없음) 됩니다.
- 전산 추첨을 통해 배정된 동·호로만 계약체결 가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또한,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본 공고의 입주자선정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 적용)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공급대상 주택(23세대) : 301동 101호 등 23세대 (p.5~8 참고)

## 알 려 드 린 니 다

- 금회 공급하는 의왕초평 A-3블록 981세대 중 654세대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327세대는 행복주택으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 의왕초평 A-3블록 내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동호 배정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5.13.(월)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요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4820005이며, 공고문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0.12.31.) 및 추가입주자 모집공고(2023.09.08.) 이후 해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23호)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의왕초평 A-3블록 최초 모집공고(2020.12.31.) 및 추가입주자 모집공고(2023.09.08) 기당첨자 및 계약자(본인 및 세대원) 또는 부적격 당첨 통보받은 자(본인)는 본 공고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불가하며, 청약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됩니다.
- 의왕초평 A-3블록 신혼희망타운은 소셜믹스 방식으로 조성되어 같은 동, 같은 라인에 공공분양 및 행복주택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 금회 공급주택은 준공이 완료된 단지로 **해약세대가 선택한 읍선내역으로 시공**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약세대가 선택한 계약타입별 및 공간옵션, 선택품목 등의 추가설치 및 변경이 불가**하며, **해약세대의 선택사양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오니 청약 전 반드시 해당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팜플릿 및 사이버 견본주택(www.lhuwang-a3.co.kr)**으로 대체되오니 청약 전 세부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팜플릿 및 사이버 견본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를 기준으로 제작되었으며, 금회 공급 세대는 해약세대가 선택한 계약타입별, 읍선내역으로 시공되었습니다.
- 의왕초평 A-3블록 신혼희망타운의 브랜드명은 ‘엘리트 의왕역’입니다.
- 의왕초평 A-3블록 신혼희망타운은 입주가 완료된 단지로, 별도 사전점검은 진행하지 않으며, 금회 모집공고 계약자의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4.05.13.) 의왕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며 다음의 각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주택 기준(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단,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가 각각 공급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으로 공급합니다.(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 이하 같음)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원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이하 같음)만을 인정합니다.

<표> 신청자격별 신청 및 검증 기준

신청자격	기본요건	주택 등의 자격검증 범위
신 혼 부 부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아래 참조)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신청자가 청약 시 직접 입력)
한 부모 가족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부 또는 모	무주택세대구성원(아래 참조)

- ※ 신혼희망타운의 청약자는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 필히 **입주 시까지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하여야 하오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의 경우 각각 신청하여 중복당첨될 수는 있으나, 중복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처리 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따라 **총자산가액(362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가입하고 **입주 시까지** 해당 모기지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4.05.13) 해당주택건설지역(외왕시)에 거주하는(주민등록표등본 기준)경우에 한하여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청약신청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라 사업주체에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공고일 기준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하거나 연간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예비신혼부부에 한함)’**는 **주택소유여부, 중복청약, 재당첨제한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 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 주와의 관계, 전입병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분양권등을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 한 경우, 실거래신고사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산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제한 및 의무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향후 관계법령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일(~로부터)	기간	관련 법령
재당첨제한	금회 당첨자발표일	10년	「공공주택 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전매제한	최초 입주자선정일(‘21.01.22)	3년*	「주택법」 제64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
거주 의무	-	-	「주택법」 제57조의2,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최초 입주자선정일로부터 전매제한이 3년 적용되었으나 **공고일 현재 전매제한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단, 특별공급 당첨자가 아닌 일반 당첨자로 관리),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재당첨제한 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기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 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공 고	청약 접수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추첨·발표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접수	계약 체결(현장계약)
'24.05.13.(월)	'24.05.23.(목) (10:00 ~ 17:00)	'24.05.27.(월) 추첨 11:00, 발표 18:00 이후	'24.05.30.(목)~'24.05.31.(금) (10:00 ~ 16:00)	'24.06.27.(목) (10:00 ~ 16:00)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현장접수 불가		추첨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판매팀 발표 :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LH 수원주택전시관	LH 수원주택전시관

- ※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및 현장계약 장소** : LH 수원 주택전시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49)
- ※ 입금계약 및 계약 관련 상세절차는 추후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형태(055.0000A, 055.9800B)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하신 주택형(055.0000A, 055.9800B) 내에서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을 통해 동호수가 배정(신청자격별·동별·층별·타입별(55A-1, 55A-2, 55A-3)·향별·층세대 구분 없음)됩니다.**
- 추첨을 통해 배정된 동·호로만 계약체결 가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플러스)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이 공고문에 기재된 나이는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민법」 제158조에 따라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362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 **개 요** : 연 1.3% 고정금리(최초 모집공고 기준)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주택매각금액-분양금액)의 최소 10%~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 부여**
- **대출금리는 대출신청 시점의 금리가 적용되며, 본 상품은 「주택도시보증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운용과 관련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무가입 대상** :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362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
- **가입한도** : 4억원(주택 공급가격의 70% 이내)      ■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 **대출기간** : 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균등분할상환 원칙, 중도상환시에는 잔액상환만 허용 (3년간 조기상환 원칙적 불허)
- **대출절차** : **분양계약 체결** → **대출신청(잔금 2~3개월 전)** → **대출 심사 및 실행** → 수탁은행에서 **대출 결과**를 LH에 **전송** → LH는 **대출 실행 확인 및 입주 허용**
- **문의** :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신한은행(1599-8000), HUG 콜센터(1566-9009)
- **상세자료** : 주택도시보증공사(nhuf.molit.go.kr) 홈페이지내 [개인상품-주택구입자금]의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확인

**<수의 공유 정산표 일부 발췌>**

대출기간 (년)	담보인정비율 70%			담보인정비율 60% 실행시			담보인정비율 50% 실행시			담보인정비율 40% 실행시			담보인정비율 30% 실행시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1~9	50%	40%	30%	45%	35%	25%	40%	30%	20%	35%	25%	15%	30%	20%	10%
14	40%	30%	20%	35%	25%	15%	30%	20%	10%	25%	15%	10%	20%	15%	10%
19	30%	20%	10%	25%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24이상	20%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 \* 담보인정비율은 70%, 60%, 50%, 40%, 30% 중에서 선택하며, 선택한 담보인정비율 적용 시 가입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한도(최대 4억원)를 기준으로 LTV 비율 및 수익 공유비율이 재적용됩니다.
- \* 정산비율이 30%인 경우, 매각차익(매도가격-분양가격)의 30%를 기금이 회수
- \* 정산시 처분손익(또는 평가손익)은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제반 비용(부동산 중개료, 감정평가 수수료,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주택수리비용, 차주가 납부한 기금이자 등은 감안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기상환시 감정평가 비용은 기금이 부담하나, 대출개시 후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감정평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의왕초평 A-3블록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의무 가입해야 하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제당첨제한 적용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되어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발표일 현재 제당첨제한기간 내에 있는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

**[제당첨 제한 사례 참고]**

- ※ 2020.04.17.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제당첨 제한됩니다.
- ※ 아래 예시는 제당첨제한 기간 강화 이전에 당첨된 사례로서 종전의 제당첨 제한규정을 적용합니다.
  - 2015년 6월 서울특별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0년 6월까지) 제당첨 제한
  - 2014년 9월 경기도 동탄2지구에서 공급한 85초과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1년간(2015년 9월까지) 제당첨 제한
  - 2016년 7월 경기도 하남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공공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1년 7월까지) 제당첨 제한
  - 2016년 11월 광주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 아님)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제당첨 제한 기간 없음
  - 2017년 7월 부산광역시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3년간(2020년 7월까지) 제당첨 제한
- ※ 제당첨 제한의 “세대” 기준은 1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일하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제당첨 제한 여부 등은 한국부동산원(www.applyhome.co.kr) 당첨사실조회에서 세대원 각각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의왕초평 A-3블록 최초 모집공고(2020.12.31.) 및 추가입주자 모집공고(2023.09.08) 기당첨자 및 계약자(본인 및 세대원) 또는 부적격 당첨 통보받은 자(본인)는 본 공고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불가하며, 청약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됩니다.**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모바일기기에 인증서가 복사되어야 하오니,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시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단, 부부(예비신혼부부는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처리 됨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거주 지역, 주택소유 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 I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 1. 공급규모

■ 의왕초평지구 A-3블록(총 981세대)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잔여세대 23세대(전용면적 55㎡)

## 2. 공급대상

블록	주택형	타입	발코니 유형	세대당 주택면적(㎡)					공유 대지 면적 (㎡)	금회 공급 세대수 (공공분양)	1층 세대수	최고 층수	최초 입주	금회 입주 지정기간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 (계)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지 하 주차장										
합 계														23	2	25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잔금납부 후 입주
A-3	055.0000A	55A-1	확장	55.93	22.9736	7.1800	42.1168	128.2004	41.2697	4	-	14					
		55A-2	확장	55.98	22.9941	7.1865	42.1545	128.3151	41.3066	10	2	20					
		55A-3	확장	55.99	22.9982	7.1877	42.1620	128.3379	41.3139	6	-	25					
	055.9800B	55B	확장	55.98	22.9941	7.1865	42.1545	128.3151	41.3066	3	-	25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형 055.0000A형 20세대, 055.9800B 3세대를 공급하며, 주택형별(055.0000A, 055.9800B)로 청약신청 후 전산추첨을 통해 동호수가 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55A-1, 55A-2, 55A-3 모두 055.0000A로 신청하며, 추첨을 통해 타입 및 동·호수 무작위로 배정됨)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 어떠한 경우에도 추첨을 통해 배정받은 동·호변경은 불가하며,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금회 입주자선정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 적용)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형별 신청접수 초과 시에는 공급물량의 50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형별 신청접수 미달 시 향후 재공급합니다.
- ※ 동별 최고층수 차이(20층 이하 또는 20층 초과)에 따른 구조설계상 벽체 두께 차이로 인해 동·호별 형태·면적의 차이가 발생하여, 같은 주택형이라도 주택형별 각각 A-1, A-2, A-3으로 타입이 구분됩니다.
- ※ 같은 주택형이라도 공급면적 차이로 인해 타입별 주택가격은 상이합니다.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팜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 1층 세대수는 기계약세대, 행복주택 및 가정어린이집 등으로 배정된 세대를 제외하고 공급 가능한 잔여 세대수입니다.
-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단, 지하주차장은 일부 무량판 구조),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3.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 추가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포함) 공급가격 및 안내

- 금회 공급주택은 해약세대가 선택한 옵션내역으로 시공되었으며 계약타입별,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포함), 공간선택, 추가선택품목(1)(2) 계약내역대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주택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10%, 계약일 납부) 및 잔금(90%,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의 순으로 대금납부 하셔야 합니다.
- 주택분양가격(발코니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별도)

[단위 : 천원]

주택형	타입	층별	타입별	주택가격	계약금 (10%)	잔금 (90%)
					계약시	입주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055.0000A	55A-1	2층	기본형	368,940	36,894	332,046
		4층	기본형	384,470	38,447	346,023
		5층~최상층	기본형	388,360	38,836	349,524
	마이너스옵션		368,370	36,837	331,533	
	55A-2	1층	기본형	365,370	36,537	328,833
		4층	기본형	384,810	38,481	346,329
		5층~최상층	기본형	388,700	38,870	349,830
	55A-3	2층	기본형	369,330	36,933	332,397
		4층	기본형	384,880	38,488	346,392
5층~최상층		기본형	388,770	38,877	349,893	
055.9800B	55B	5층~최상층	기본형	388,700	38,870	349,830
			마이너스옵션	368,455	36,845	331,610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타입별·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본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따라 주택가격이 총자산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환"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의무 가입해야 하므로, 주택도시기금 용자액(55,000천원은 공사가 받은 이후 상환 예정임)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 ※ 해당 단지는 입주가 완료된 단지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잔금 완납 후 입주가 가능하며, 잔금납부기한 내 잔금 미납 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포함), 공간선택, 추가선택품목(1)(2) 계약내역 : **해약체다가 선택한 옵션내역으로 시공되어 추가설치 및 변경이 불가하며 그대로 승계하셔야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위 '주택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주택형	타입	마이너스 유무	해당 동·호	추가선택품목	계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	055.0000A	55A-2	기본형	301-101	<b>합 계</b>	<b>14,158</b>	<b>1,633</b>	<b>12,525</b>
					balcony 확장	7,828	1,000	6,828
					[공간선택① -기본형]침실2/알파룸 분리	0	0	0
					[공간선택② -B]공간확장형 (팬트리/드레스룸 통합)	0	0	0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2+알파룸)	6,330	633	5,697
					기능성러그카펫	0	0	0
					현관수납장 시스템선반	0	0	0
2	055.0000A	55A-2	기본형	301-402	<b>합 계</b>	<b>14,882</b>	<b>1,705</b>	<b>13,177</b>
					balcony 확장	7,828	1,000	6,828
					[공간선택① -기본형]침실2/알파룸 분리	0	0	0
					[공간선택② -B]공간확장형 (팬트리/드레스룸 통합)	0	0	0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2+알파룸)	6,330	633	5,697
					기능성러그카펫	0	0	0
					주방 키 큰 수납장	724	72	652
현관수납장 시스템선반	0	0	0					
3	055.0000A	55A-3	기본형	302-401	<b>합 계</b>	<b>15,548</b>	<b>1,768</b>	<b>13,780</b>
					balcony 확장	7,864	1,000	6,864
					[공간선택① -기본형]침실2/알파룸 분리	0	0	0
					[공간선택② -기본형]팬트리/드레스룸 분리	0	0	0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2+알파룸)	6,330	633	5,697
					전기하이브리드룩탑(인덕션2+하이라이트1)	630	63	567
					기능성러그카펫	0	0	0
					주방 키 큰 수납장	724	72	652
					주방팬트리 시스템선반	0	0	0
현관수납장 시스템선반	0	0	0					
4	055.9800B	55B	기본형	302-803	<b>합 계</b>	<b>18,761</b>	<b>2,079</b>	<b>16,682</b>
					balcony 확장	7,948	1,000	6,948
					[공간선택 -기본형]침실2/알파룸 분리	0	0	0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2+알파룸)	6,330	633	5,697
					기능성러그카펫	0	0	0
					불박이장(침실2)	1,168	116	1,052
					시스템선반(드레스룸)	1,423	142	1,281
					아일랜드식탁	1,168	116	1,052
					주방 키 큰 수납장	724	72	652
					현관수납장 시스템선반	0	0	0
문 개폐방향(침실1)_안어단이(침실향)	0	0	0					
5	055.9800B	55B	기본형	303-902	<b>합 계</b>	<b>11,798</b>	<b>1,385</b>	<b>10,413</b>
					balcony 확장	7,948	1,000	6,948
					[공간선택 -기본형]침실2/알파룸 분리	0	0	0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	3,850	385	3,465
					기능성러그카펫	0	0	0
					현관수납장 시스템선반	0	0	0
문 개폐방향(침실1)_안어단이(침실향)	0	0	0					
6	055.0000A	55A-3	기본형	303-1103	<b>합 계</b>	<b>20,235</b>	<b>2,235</b>	<b>18,000</b>
					balcony 확장	7,864	1,000	6,864
					[공간선택① -A]공간확장형(침실2/알파룸 통합)	0	0	0
					[공간선택② -B]공간확장형(팬트리/드레스룸 통합)	0	0	0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2(알파룸 확장포함))	5,710	571	5,139
					전기하이브리드룩탑(인덕션2+하이라이트1)	630	63	567
					기능성러그카펫	0	0	0
					불박이장(침실2+알파룸 통합)	3,299	329	2,970
					시스템선반(드레스룸+주방팬트리 통합)	2,008	200	1,808
주방 키 큰 수납장	724	72	652					
현관수납장 시스템선반	0	0	0					
7	055.0000A	55A-1	기본형	304-201	<b>합 계</b>	<b>10,567</b>	<b>1,263</b>	<b>9,304</b>
					balcony 확장	7,929	1,000	6,929
					[공간선택① -A]공간확장형(침실2/알파룸 통합)	0	0	0
					[공간선택② -B]공간확장형(팬트리/드레스룸 통합)	0	0	0
					전기하이브리드룩탑(인덕션2+하이라이트1)	630	63	567
					기능성러그카펫	0	0	0
					시스템선반(드레스룸+주방팬트리 통합)	2,008	200	1,808
현관수납장 시스템선반	0	0	0					

구분	주택형	타입	마이너스 유무	해당 동·호	추가선택품목	계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8	055.0000A	55A-1	기본형	304-402	<b>합 계</b>	<b>19,573</b>	<b>2,163</b>	<b>17,410</b>		
					balcony 확장	7,929	1,000	6,929		
					[공간선택① -A]공간확장형(침실2/알파룸 통합)	0	0	0		
					[공간선택② -B]공간확장형(팬트리/드레스룸 통합)	0	0	0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2(알파룸확장포함))	5,710	571	5,139		
					가스하이브리드쿠킹탑(가스1+하이라이트2)	570	57	513		
					기능성러그카펫	0	0	0		
					불박이장(침실2+알파룸통합)	3,299	329	2,970		
					아일랜드식탁	1,341	134	1,207		
					주방 키 큰 수납장	724	72	652		
현관수납장 시스템선반	0	0	0							
9	055.0000A	55A-1	기본형	304-604	<b>합 계</b>	<b>11,779</b>	<b>1,385</b>	<b>10,394</b>		
					balcony 확장	7,929	1,000	6,929		
					[공간선택① -기본형]침실2/알파룸 분리	0	0	0		
					[공간선택② -B]공간확장형(팬트리/드레스룸 통합)	0	0	0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	3,850	385	3,465		
					기능성러그카펫	0	0	0		
					현관수납장 시스템선반	0	0	0		
10	055.0000A	55A-2	기본형	306-901	<b>합 계</b>	<b>20,029</b>	<b>2,218</b>	<b>17,811</b>		
					balcony 확장	7,828	1,000	6,828		
					[공간선택① -기본형]침실2/알파룸 분리	0	0	0		
					[공간선택② -기본형]팬트리/드레스룸 분리	0	0	0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2+알파룸)	6,330	633	5,697		
					전기하이브리드쿠킹탑(인덕션2+하이라이트1)	630	63	567		
					기능성러그카펫	0	0	0		
					불박이장(침실2)	1,168	116	1,052		
					시스템선반(드레스룸)	2,008	200	1,808		
					아일랜드식탁	1,341	134	1,207		
					주방 키 큰 수납장	724	72	652		
주방팬트리 시스템선반	0	0	0							
현관수납장 시스템선반	0	0	0							
11	055.0000A	55A-2	기본형	307-503	<b>합 계</b>	<b>23,117</b>	<b>2,527</b>	<b>20,590</b>		
					balcony 확장	7,828	1,000	6,828		
					[공간선택① -A]공간확장형(침실2/알파룸 통합)	0	0	0		
					[공간선택② -B]공간확장형(팬트리/드레스룸 통합)	0	0	0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2(알파룸확장포함))	5,710	571	5,139		
					전기하이브리드쿠킹탑(인덕션2+하이라이트1)	630	63	567		
					기능성러그카펫	0	0	0		
					불박이장(침실1)	2,301	230	2,071		
					불박이장(침실2+알파룸 통합)	3,299	329	2,970		
					시스템선반(드레스룸+주방팬트리 통합)	2,008	200	1,808		
					아일랜드 식탁	1,341	134	1,207		
현관수납장 시스템선반	0	0	0							
12	055.0000A	55A-2	기본형	307-1204	<b>합 계</b>	<b>8,552</b>	<b>1,072</b>	<b>7,480</b>		
					balcony 확장	7,828	1,000	6,828		
					[공간선택① -기본형]침실2/알파룸 분리	0	0	0		
					[공간선택② -B]공간확장형(팬트리/드레스룸 통합)	0	0	0		
					주방 키 큰 수납장	724	72	652		
					현관수납장 시스템선반	0	0	0		
13	055.0000A	55A-2	기본형	308-501	<b>합 계</b>	<b>15,424</b>	<b>1,758</b>	<b>13,666</b>		
					balcony 확장	7,828	1,000	6,828		
					[공간선택① -기본형]침실2/알파룸 분리	0	0	0		
					[공간선택② -기본형]팬트리/드레스룸 분리	0	0	0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	3,850	385	3,465		
					가스하이브리드쿠킹탑(가스1+하이라이트2)	570	57	513		
					기능성러그카펫	0	0	0		
					불박이장(침실2)	1,168	116	1,052		
					시스템선반(드레스룸)	2,008	200	1,808		
					주방팬트리 시스템선반	0	0	0		
현관수납장 시스템선반	0	0	0							
14	055.0000A	55A-3	기본형	309-804	<b>합 계</b>	<b>12,344</b>	<b>1,448</b>	<b>10,896</b>		
					balcony 확장	7,864	1,000	6,864		
					[공간선택① -A]공간확장형(침실2/알파룸 통합)	0	0	0		
					[공간선택② -B]공간확장형(팬트리/드레스룸 통합)	0	0	0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	3,850	385	3,465		
					전기하이브리드쿠킹탑(인덕션2+하이라이트1)	630	63	567		
					기능성러그카펫	0	0	0		
현관수납장 시스템선반	0	0	0							

구분	주택형	타입	마이너스 유무	해당 동·호	추가선택품목	계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5	055.0000A	55A-3	기본형	310-2004	<b>합 계</b>	<b>23,153</b>	<b>2,527</b>	<b>20,626</b>					
					발코니 확장	7,864	1,000	6,864					
					[공간선택① -A]공간확장형(침실2/알파룸 통합)	0	0	0					
					[공간선택② -기본형]팬트리/드레스룸 분리	0	0	0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2(알파룸확장포함))	5,710	571	5,139					
					전기하이브리드족탕(인덕션2+하이라이트1)	630	63	567					
					기능성룸카펫	0	0	0					
					불박이장(침실1)	2,301	230	2,071					
					불박이장(침실2+알파룸통합)	3,299	329	2,970					
					시스템선반(드레스룸)	2,008	200	1,808					
					아일랜드식탁	1,341	134	1,207					
					주방팬트리 시스템선반	0	0	0					
현관수납장 시스템선반	0	0	0										
16	055.0000A	55A-3	기본형	312-204	<b>합 계</b>	<b>17,553</b>	<b>1,968</b>	<b>15,585</b>					
					발코니 확장	7,864	1,000	6,864					
					[공간선택① -기본형]침실2/알파룸 분리	0	0	0					
					[공간선택② -기본형]팬트리/드레스룸 분리	0	0	0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2(알파룸확장포함))	5,710	571	5,139					
					전기하이브리드족탕(인덕션2+하이라이트1)	630	63	567					
					시스템선반(드레스룸)	2,008	200	1,808					
					아일랜드식탁	1,341	134	1,207					
					주방팬트리 시스템선반	0	0	0					
					현관수납장 시스템선반	0	0	0					
					17	055.0000A	55A-3	기본형	312-701	<b>합 계</b>	<b>14,194</b>	<b>1,633</b>	<b>12,561</b>
										발코니 확장	7,864	1,000	6,864
[공간선택① -기본형]침실2/알파룸 분리	0	0	0										
[공간선택② -기본형]팬트리/드레스룸 분리	0	0	0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2+알파룸)	6,330	633	5,697										
기능성룸카펫	0	0	0										
주방팬트리 시스템선반	0	0	0										
현관수납장 시스템선반	0	0	0										
18	055.9800B	55B	마이너스 옵션형	312-1703	<b>합 계</b>	<b>3,719</b>	<b>1,000</b>	<b>2,719</b>					
					발코니 확장	3,719	1,000	2,719					
19	055.0000A	55A-1	마이너스 옵션형	313-1102	<b>합 계</b>	<b>4,031</b>	<b>1,000</b>	<b>3,031</b>					
					발코니 확장	4,031	1,000	3,031					
20	055.0000A	55A-2	기본형	314-101	<b>합 계</b>	<b>8,552</b>	<b>1,072</b>	<b>7,480</b>					
					발코니 확장	7,828	1,000	6,828					
					[공간선택① -기본형]침실2/알파룸 분리	0	0	0					
					[공간선택② -B]공간확장형(팬트리/드레스룸 통합)	0	0	0					
					기능성룸카펫	0	0	0					
					주방 키 큰 수납장	724	72	652					
					현관수납장 시스템선반	0	0	0					
21	055.0000A	55A-2	기본형	314-704	<b>합 계</b>	<b>21,700</b>	<b>2,385</b>	<b>19,315</b>					
					발코니 확장	7,828	1,000	6,828					
					[공간선택① -기본형]침실2/알파룸 분리	0	0	0					
					[공간선택② -기본형]팬트리/드레스룸 분리	0	0	0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2+알파룸)	6,330	633	5,697					
					기능성룸카펫	0	0	0					
					불박이장(침실1)	2,301	230	2,071					
					불박이장(침실2)	1,168	116	1,052					
					시스템선반(드레스룸)	2,008	200	1,808					
					아일랜드식탁	1,341	134	1,207					
					주방 키 큰 수납장	724	72	652					
					주방팬트리 시스템선반	0	0	0					
현관수납장 시스템선반	0	0	0										
22	055.0000A	55A-2	기본형	314-801	<b>합 계</b>	<b>20,438</b>	<b>2,260</b>	<b>18,178</b>					
					발코니 확장	7,828	1,000	6,828					
					[공간선택① -기본형]침실2/알파룸 분리	0	0	0					
					[공간선택② -B]팬트리/드레스룸 통합	0	0	0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2+알파룸)	6,330	633	5,697					
					전기하이브리드족탕(인덕션2+하이라이트1)	630	63	567					
					기능성룸카펫	0	0	0					
					불박이장(침실1)	2,301	230	2,071					
					시스템선반(드레스룸+주방팬트리통합)	2,008	200	1,808					
					아일랜드식탁	1,341	134	1,207					
					현관수납장 시스템선반	0	0	0					

구분	주택형	타입	마이너스 유무	해당 동·호	추가선택품목	계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23	055.0000A	55A-2	기본형	314-1301	합 계	14,788	1,696	13,092
					발코니 확장	7,828	1,000	6,828
					[공간선택① -기본형]침실2/알파룸 분리	0	0	0
					[공간선택② -B]공간확장형(팬트리/드레스룸 통합)	0	0	0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2+알파룸)	6,330	633	5,697
					전기하이브리드족탕(인덕션2+하이라이트1)	630	63	567
					현관수납장 시스템선반	0	0	0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해당세대 : 312동 1703호(55B타입), 313동 1102호(55A-1타입)

- \* 금회 공급하는 주택 중 2세대(312동 1703호, 313동 1102호)는 마이너스옵션 해당 세대입니다. **당첨자는 계약세대가 선택한 옵션내역(마이너스옵션 선택포함)을 그대로 승계하셔야 하며 선택품목의 추가설치 및 변경은 불가합니다.**
- \* **당첨자는 전산 추첨을 통해 마이너스옵션 세대로 동·호수가 배정될 수 있으며, 배정된 동·호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본 공고 입주자선정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 적용)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마이너스옵션세대에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세대에 시공되는 품목
① 문	문틀(상부마감판 포함), 문짝, 문선, 목재공들, 확장형 발코니출입문(PD), 디지털도어록	옥실문틀 하부 썬,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 방화문틀 및 문짝(도장마감), PL창호, 대피공간 창호
② 바닥	합판마루, 발코니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걸레받이, 현관(바닥재, 마루귀틀)	바닥방수, 바닥난방 및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③ 벽	벽지(초배포함), 거실(아트월, MDF판, 포세린타일, 무늬목시트 등), 주방 벽타일(타일붙임 몰탈 포함), 경량벽체, 목조칸막이벽	시멘트벽돌(시멘트몰탈 또는 석고보드 포함), 단열재, 석고보드, 경량콘크리트판넬(세대칸막이벽), 발코니 벽도장(수성페인트) 경량천정을 및 석고보드, 우물천정, 커튼박스, 발코니천정 도장,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 스피커, 무선AP
④ 천장	벽지(초배포함), 등박스 몰딩, 반자동림	
⑤ 욕실	천정재(천정틀 포함),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등), 액세서리류, 조명기구, 수전류, 샤워부스, 욕실장, 비데, 욕실배기구, 욕실벽 및 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 포함), 젠다이 상부 인조대리석	시멘트 벽돌, 벽 및 바닥방수,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⑥ 주방	주방기구 및 기구(가스쿠포, 레인지후드, 음식물탈수기 등), 기기류(액세서리류 일체), 수전류(절수기 포함), 주방벽 타일(타일붙임 몰탈 포함)	소방관련시설,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가스배관 포함)
⑦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
⑧ 일반가구	신발장, 드레스룸가구, 화장대, 반침가구, 김치냉장고장	통신단자함(신발장후면)
⑨ 기타	발코니 수전류, 자동빨래건조대	설비배관, 거실월패드, 소방감지기, 침입감지기, 에어컨냉매배관(기본형 설치위치), 세대환기시스템,계량기류

※ 마이너스옵션세대 유의사항 안내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에도 내,외부 PL창호는 모두 설치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대한 입주자의 시공·설치는 잔금납부기한(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내 잔금을 완납하고,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 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토록 해야합니다.
-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공사 계약 시 하자행보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증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하여야 합니다.
- 시공 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공용배기방식)를 시공하여야 합니다.(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 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에 관한 약약을 징구(제출하여야)합니다 .(현장계약 장소에 양식 비치)
-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시공 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공간선택 안내[선택불가] : 세대별 추가선택품목에 납부방식 및 금액 표기(p.5~8), 세부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0.12.31.) 참조

■ 추가선택품목(1)[선택불가] : 시스템에어컨, 주방가전, 바닥재, 가구 등 : 세대별 추가선택품목에 납부방식 및 금액 표기(p.5~8), 세부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0.12.31.) 참조

■ 추가선택품목(2) 안내[선택불가] : 발코니 확장 : 세대별 추가선택품목에 납부방식 및 금액 표기(p.5~8), 세부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0.12.31.) 참조

※ 본 단지는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발코니 확장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금액 및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계약자 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원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4. 입주금 납부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최대 주택가격의 70%(4억원 한도)까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주택은 주택분양가격이 총자산기준가액(362백만원)을 초과하므로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해당 전용대출 상품에 의무적으로 주택가격의 30%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가입 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55,000천원)은 받으실 수 없으며, 대출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의 '개인상품'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금은 계약금, 잔금(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본 단지는 입주지정기간이 종료된 단지로 입주자 사전방문은 불가능하며, 잔금납부기간(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내 잔금납부 후 입주자 가능합니다.
- 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나, 본 단지는 입주가 완료된 단지로 선납할인 적용이 불가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융자액(55,000천원)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하여야 하며, 잔금납부기한(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이후에 잔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연 8.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에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수령)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연체료,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당해 주택의 소유권은 잔금 완납 후 수분양자에게 이전되며, 분양대금 완납 후 등기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므로 총 주택가격 완납 후에는 법정기한 내에 수분양자가 직접 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II 신청자격 및 신청기준(무주택 등)

### 1.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5.13.) 현재 의왕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1세대 1주택)로서 아래 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 ②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입주 시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제3호다목에 따라 계약 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 ③ **한부모가족** : **6세 이하(만7세 미만을 말함)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 특별공급 당첨여부, 소득 및 자산요건은 불문**하며, **당첨 이후 주택소유여부 등 신청자격 조회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 금회 입주(예정)자중 총자산가액(362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가입 사실을 입주시까지 증명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여부 등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해당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단,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의 경우 각각 신청하여 중복당첨될 수는 있으나, 중복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처리 됨.

###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 후 주택(분양권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처리 됨
  -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 무주택(분양권등 포함) 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 및 분양권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상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개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등 포함) 선정 기준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선정 기준일(단,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 5) 기타 주택소유여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선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선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선정합니다.

■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첩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절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23.5.10) 전에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 **신혼희망타운의 계약자는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I 신청 시 확인사항(전매제한, 재당첨제한,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등)

1. 청약 신청 전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청약 신청 전 확인가능한 청약제한사항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1. 세대구성원 청약자격확인	한국부동산원 주택 청약서비스(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2. 신청자 청약제한사항(재당첨제한, 과거당첨사실확인, 부적격당첨제한 등)	→청약자격확인→청약제한사항 확인→
3. 주택소유확인	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예비)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2. 전매제한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최초 입주자선정일(2021.01.22)로부터 전매제한이 3년 적용되었으나 **공고일 현재(2024.05.13.) 전매제한기간이 종료**되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제당첨제한은 금회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0년 적용됩니다.**

## 3. 해당첨 제한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포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친척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또한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 중 1인만 신청(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 처리됩니다.
- ※ 단,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의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후당첨 단지 부적격 처리됨).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합니다.

## 5.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금회 공급(공공분양) 물량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올림)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금회 공급(공공분양) 물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간 인정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남은 주택이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차후 재공급하게 됩니다.
- 동일 주택형 내 미계약물량이 2개 호 이상이면서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판매팀을 방문 또는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IV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유의사항

## 1. 신청일정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024.05.23.(목) (10:00 ~ 17:00)	인터넷 신청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2. 신청방법 - PC인터넷·모바일 신청 [방문신청 불가]

###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소지하고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플러스”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인증서(공동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http://www.lh.or.kr)) 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발급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연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하나의 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신혼희망타운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공공분양(신혼희망)선택 → 주택형 선택 → 신청유형(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 신청시간 : 2024.05.23.(목) 10:00 ~ 17:00

-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자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 접수마감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신청 일시 이후로는 청약접수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접수를 완료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해당지역 거주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3. 기타 유의사항

- 팜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신청(55A-1, 55A-2, 55A-3 모두 055.0000A로 신청하며 동·호 추첨시 무작위로 배정됨)** 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마감시간 경과 후 변경 불가)
-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시어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 불가)**
- 신청대상자별로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당첨사실이 제출서류 등과 달라 부적격이 발생할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결과는 2024.05.23.(목) 오후 9시 이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 게시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V **추첨,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1. 추첨(공공분양 동·호,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추첨 일시 : 2024.05.27.(월) 11:00
- 추첨 내용 : **의왕초평 A-3BL 신촌희망타운(공공분양) 잔여세대 당첨자, 예비입주자, 당첨자의 동·호수**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대한 추첨은 우리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 입주자선정 및 동호 추첨 참관을 원하는 분은 **05.24.(금) 14시까지 신청**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판매팀 ☎ 031-250-8181)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관인원은 선착순 3명(본인)으로 모집함에 따라 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현장접수만 가능)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재당첨제한 적용)로 간주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추첨·발표	서류제출(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체결(현장계약)
'24.05.27.(월) 추첨 11:00, 발표 18:00 이후	'24.05.30.(목) ~ '24.05.31.(금) (10:00 ~ 16:00)	'24.06.27.(목) (10:00 ~ 16:00)
추첨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판매팀 발표 :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LH 수원주택전시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49) [※ 현장 접수만 가능, 우편 및 이메일·팩스 접수 불가]	LH 수원주택전시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49)

- ※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안내 및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니,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일부는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 **추첨 결과 마이너스순서 해당 세대로 동·호를 배정받으실 수 있고 추첨을 통해 배정된 동·호로만 계약체결 가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 ※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본 공고의 입주자선정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 적용)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판매팀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간(2024.05.30.~2024.05.31.)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재당첨 제한 적용)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5.13.)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집서 교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 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5.13.)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 표기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서류	서류유형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①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필수	본인/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필수	본인	(안내)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② 주민등록표등본	필수	본인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선택	(예비)배우자, 세대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당시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적격심사를 위해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필수	본인 및 세대원	(안내) 공고시 첨부된 해당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체결이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필수	본인	(안내) 반드시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④ 주민등록표초본	필수	본인	(안내) 반드시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선택	(예비)배우자, 세대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당시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적격심사를 위해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필수	본인	(안내)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⑥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필수	본인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는 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혼인사실 증명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필수	예비배우자	• (예비신혼부부)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⑦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필수	본인 및 세대원	•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필수	본인, (예비)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⑧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필수	본인, (예비)배우자	• 태어나 입양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약속(계약 체결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⑨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필수	본인, (예비)배우자	•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⑩ 한부모가족증명서	필수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4.05.13.)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정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개명했을 경우 개명 전·후 모두발급
⑪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필수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4.05.13.)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정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개명했을 경우 개명 전·후 모두발급
⑫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필수	(예비)배우자, 세대원	•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이 외국인인 경우

4.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체결 안내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5.13.)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분	계약서류	
본인 계약 시	현장계약	①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 (현장수납 불가) * 주택공급금액 10% + 발코니 확장비용(1,000천원) + 선택사양품금액 10%(옵션 선택에 따른 계약금 확인 후 입금 바랍니다.)
		② 당첨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③ 도장 (본인 서명날인도 가능)
		④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설명서(계약 장소에 비치)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인감증명 방식	서명확인 방식
	① 위임장 (공고 시에 첨부된 양식) ※ 인감도장 날인 필수	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LH청약플러스-분양임대정보-자료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및 인감도장(위임장에 직접 날인하려는 경우)	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 및 본인(계약자) 도장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분양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등기 시까지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처 : 수입인지 사이트(<http://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 등)

## VII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주택도시보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팸플릿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요인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자선정일(2021.01.22.)로부터 전매제한이 3년 적용되었으나, 공고일 현재는 전매제한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로 선정(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를 받게 됩니다.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 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명단관리 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공공분양 위약금 [총주택가격(선택시상품품 가격 포함)의 10퍼센트]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당첨 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판매팀으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변경방법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 로그인 → 고객센터 → 나의정보 → 개인정보변경]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02.21. 시행)에 따라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리 공사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절차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3. 지구 및 단지 여건 등

#### ■ 지구 여건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09호, 2017.04.10.)로 최초 사업승인된 "의왕초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기반시설은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18호, 2023.09.15.) "의왕초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승인"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나 승인조건 이행, 지자체 의견, 민원 등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이 일부 변경예정임
- 지구 및 단지 동측에 의왕역(1호선)이 인접하고 있으며 지상철 특성상 열차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지구의 개발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며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지구단위 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될 수 있음
- 지구 내에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행복주택)-공공임대-민간임대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음
- 지구 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사업시행으로 유발되는 학생은 지구 내 초등학교를 신설하여 배치할 예정이나, 부득이한 경우 A-3블록 공급 특성(초기 취학 학생수가 적은 신혼대상)을 고려하여 군포부곡중앙초등학교로 배치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학생배치계획을 따름.
- 현재 학교 미설립으로 교육부 학교 설립 관련 심사를 통해 학교설립 시기가 결정될 예정으로 의왕초평 사업지구 내 학생배치 여건, 학생유입 규모 변동 등 학생배치계획 변동요인 발생 및 교육정책 여건 변화 등에 따라 학교 설립계획 및 학생배치계획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학교설립 관련 법령·지침 변경, 지구 내 블록별 공동주택 입주 시기, 인근 학교 현황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학생배치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며, 해당 교육지원청의 학생배치계획을 따름
- 지구 내 학교 등의 용지는 해당 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지구이며 공원녹지 조경공사,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 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입주민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 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은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공원, 녹지, 하천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인쇄 상에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단지 외부여건

- 단지 동측에는 단독주택 용지가 계획되어 있고, 방재시설인 저류지가 조성 예정이며, 주유소 용지가 계획되어 있음
- 단지 북측에는 상업시설, 주차장 용지가 계획되어 있음
- 단지 서측에는 자족시설 용지가 계획되어 있고, 공사가 진행 중으로 비산먼지 및 공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남쪽 1.6km지점 왕송호수 주변에 왕송맑은물처리장(하수처리장)이 있음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계획(건축, 토목, 조경 등)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의왕초평지구 내의 유헤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청약·상담창구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외의 조경식 시공구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접 공원·녹지 및 단지 내·외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 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가로등, 공원, CCTV 및 교통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이 단지 인근에 설치될 예정으로 전력, 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 설치에 따라 지상에 시설물이 노출될 수 있음
- 단지 내·외의 옹벽 등 구조물 시공구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경계 담장 등은 상위계획(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생울타리 담장 등이 설치되며, 지구단위계획지침 또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재질,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주변 도로 및 상업시설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부여건

- 단지 내부여건을 확인한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는 의왕초평지구 조성공사에 포함되어 있어 입주시 조성공사 및 아파트 단지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도에 의한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 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단지모형 및 분양공고문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시점 기준으로 도시기반시설의 실시계획 및 시공의 미완료에 따른 준공시 대기면적 또는 경계 등의 증감은 확정측량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정리할 예정이며, 공급대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단지 내·외부 레벨 차이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는 추후 관할 소방서와 협의결과에 따라 소방전용도로가 추가·변경될 수 있음
- 단지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공공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폭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에는 공공분양(654세대) 및 행복주택(327세대)이 같은 동 내 혼합 배치되어 있으며, 단지 내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 및 대지는 주택유형(분양, 임대)별 구분 없이 전체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특정 입주자(소유자) 또는 단체가 점유를 주장할 수 없음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며, 공동주택단지와 별도의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주거시설과 대지분배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아파트의 배치구조와 동별·호수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인접 동 및 인접 세대에 의해 사생활의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일부 동은 1, 2층이 필로티 및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302동 1·2호라인, 305동 1·2호라인, 306동 1호라인, 307동 4호라인, 309동 4호라인, 311동 1·2·3호라인, 312동 2·3호라인)로 시공되어 일부 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314동 4호라인 저층세대는 주출입구 문주가 인접하게 설치되어, 주방 및 후면발코니 창호를 통한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계절창고(총 295개소 중 일반형 99개소, 확장형 196개소)는 각 동 지하에 설치되며, 창고로 쓰이는 케이지 이외 내부 시설물 등은 설치되지 않고, 각 운영방법은 입주 후 결정·안내될 예정임(계절창고 설치 수량은 총 세대수 미만으로 설치되어, 일부 세대만 이용 가능할 수 있고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의 계절창고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음)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외부(1층 또는 지붕층)에 실외기가 설치되며 가동 시 일부 인접세대는 소음·먼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별도의 실외기실에 실외기가 설치되며, 가동 시 일부 인접세대는 소음·먼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지 내 시설은 지역 주민이 같이 사용하게 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중입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 및 각 동 주출입구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자동차 소음 및 전조등, 보안등, 지하주차장 경고등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법장은 설치되지 않음
- 지하주차장은 지하주차장과 각 동 계단실, 승강기 홀이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으로 설계됨
- 지하주차장 배수 트랜치는 통행에 지장이 없는 구간에는 덮개가 없으며, 트랜치 내부는 구배가 없어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본 단지의 지하 주차장 차로의 높이는 지하1층(통로 및 출입구) 2.7m, 지하1층(주차공간) 2.5m, 지하2층 2.3m로 설계됨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공용공간(전실, 계단실, 승강기실 등)은 지하층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차량 승하차 시 지하주차장 기둥에 간섭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주차대수는 지하 1,184대(지하2층 586대, 지하1층 598대, 행복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포함), 근린생활시설 주차대수는 지하 6대이며, 총 1,184대 중 49대는 장애인 주차장임(장애인 주차장 동별로 상이함)
-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은 전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단지 계획에 따라 동별 인근 주차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출입구 인접 지하1층 주차장에 근린생활시설(상가) 주차 6대가 별도로 구획되어 있음
- 계획여건에 따라 주차구획(지상 및 지하주차장) 위치 및 대수는 조정될 수 있음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대지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대지는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음
- 무인택배시스템 및 스마트우편함은 각 동별로 설치되어있음
- 일부 동의 1층 세대에 가정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으며, 주변 세대에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승강기의 경우, 301동, 302동, 304동~310동, 312동~314동(1·2호 라인/1대), 3·4호 라인(1대)과 303동 및 311동(1·2·3호 라인/2대)로 1대당 사용하는 세대 라인수가 다름
- 동별 승강기 설치 인승, 속도 적용기준은 관련 법률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세대 조합별 운행층수에 의한 규격으로 적용 설치되어있으며,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승강기 이용 세대수 차이가 있음
- 승강기 내부에는 공기청정기가 설치되며, 에어컨은 설치되지 않음
- 각 동에 설치된 승강기와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공동주택 특성상 지하층에 전기실, 저수조, 발전기실, 펌프실 등 공용시설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전기실·발전기실 설치로 인해 인근 동의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음[펌프실 설치위치 : 2개소(305동, 309동 인근)]
- 단지 내 조경식재, 야외시설, 저층부 외관, 동 현관, 지하 출입구, 건축 및 토목용벽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각 동 전면, 후면 조경 공간에는 이동식피난기구(공기안전매트) 사용을 위해 일부 식재가 생략될 수 있음
- 자전거보관소, 생활자원보관소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 후 설치될 예정이고, 특히 생활자원보관소는 세대 내에서 보일 수 있으며 주변으로 냄새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나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계약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치변경 요청은 수용이 불가함
- 302동과 303동 사이 및 304동과 305동 사이에는 근린생활시설(상가)용 생활자원보관소가 설치되어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일부세대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 차량접근이 불가하거나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해 한전 전력기(지중개폐기, 변압기)가 설치되며, 인접동 및 세대의 미관용 저해할 수 있음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층 및 지붕층에 피뢰침이 설치되며, 일부 동 일부 층은 아파트 외벽에 촉뢰용 피뢰침이 설치됨
- 단지 출입구에는 디지털차량번호인식시스템의 차량출입통제설비가 설치되어있음

- 지하주차장 내 주차공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차유도시스템이 설치되어있음
- 단지 내 CCTV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승강기, 놀이터, 동 출입구, 생활자원보관소 및 지하주차장 등에 설치됨
- 외부에서 홈네트워크 시스템 연동을 위해서는 고정IP가 필요하며, 공용 통신요금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음
- 일부 동 지붕층에는 태양광설비가 설치되어있음
- 공칭 및 위층안테나는 303동 옥탑층에 설치되어있음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되어있으며 이에 대해 위치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현재 이동통신 중계기설비 설치 위치 : 303동·306동·309동·313동 옥상층 및 지하주차장 지하 1·2층)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55B 타입의 경우 침실1(안방) 문 개폐시 부부욕실(안방화장실) 문과 중첩되어 출입이 불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청약접수를 하여야 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단, 지하주차장은 일부 무량판 구조),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됨
- 최상층 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음
- 아파트 외벽 기단부(하부1~3층)는 주로 석재로 시공되며, 일부분에 한하여 페인트도장으로 마감됨
- 각 동 1층 세대의 발코니 난간은 유공판 난간이 설치되어, 발코니 창호를 통한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아파트 각 층 승강기 홀 및 계단실 내에 환기창은 전층 설치되나, 승강기 홀, 계단실의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는 동·호수 및 배치에 따라 상이하여 환기 및 채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계단실 및 승강기 홀에 설치되는 창은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음
- 각 세대의 승강기 홀과 현관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점유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음
- 시설물의 위치·구조·색채와 지반고 등은 추후 측량결과와 지반현황 및 각종 평가·심의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동 표시·아파트 문양·벽체줄눈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건물외부, 주 현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는 관련 법규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고, 내부마감이 없으며 별도의 실(室)로 사용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내 경사로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동 주변 팬룸 환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팬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소음·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기타 지상 돌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천장 마감은 무기질계 뽀칠로 시공됨
- 아파트 외관 디자인 계획에 의해 일부 세대의 발코니 외측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임면 몰딩 등의 설치에 따라 동별·층별·호별 입면의 돌출 정도에 차이가 있고, 309동의 경우 옥상 장식물이 설치되어 강우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문양 등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택전시관, 팜플릿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성능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성능향상 등을 위해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주택전시관, 팜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음
- 주택전시관, 팜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표현되어 있으며, 본 공사에서는 전시품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을 요함(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 등은 전시품임)
- 마이너스 옵션의 경우, 욕실의 급수, 급탕 매립박스 및 일부 설비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추후 입주자는 내부공사시 점검구 설치 등 유지관리에 문제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배기 팬 설치로 인해 외부 오염된 공기 또는 냄새가 욕실 내부로 유입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의 경우,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 가능하고 공용배기시스템, 덤퍼와 연동되는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하며, 주방가구 상부장에 설치 되는 주방용 자동소화장치는 상부장 부착시 설치 요청을 받아 시공사가 설치하고 레인지후드는 입주자께서 공용배기시스템, 덤퍼와 연동되는 제품으로 직접 설치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세대를 선택하여 계약하는 경우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에 관한 안내 및 확인서를 징구함
- 세대 내 대피공간의 경우, 전동 4층부터 최상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1~3층은 상부층과 동일하게 공간구획은 되어있으나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으며, 대피공간 창호는 1~2층 미시거창, 3층~최상층 양 어딘가로 설치되며, 대피공간 내 환기기는 전동 3층부터 10층까지 설치될 예정임
- 대피공간에는 철제 방화문이 설치될 예정으로 외기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피공간은 화재 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사육,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지층·층벽·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 길이 및 높이, 실외기 설치 공간 등)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 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음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에 일반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한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재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세탁실) 공간이 협소하여 대용량 세탁기 및 건조기 설치가 제한되거나, 세탁기문과 벽 및 기타설비와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고, 상부에 세대 환기시스템 전열교환기가 설치되므로 대용량 세탁기, 세탁기-건조기 일체형 등 설치시 전열교환기 필터교환이 불가함
- 세대 바닥재, 벽지 및 벽타일, 인조대리석 등은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음
- 세대 내 목문을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음
- 벽지(도배) 공법상 초배지+정배지 봉투바름 시공 시 벽면과 도배지가 밀착되지 않음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를 낙하의 우려가 있어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자동소화장치 또는 레인지후드 배기덕트 등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의 일부가 조정되어 수납공간이 줄어들 수 있음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 부대복리시설은 피트니스센터, 어린이집, 종합보육센터, 공동주방,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사회적기업, 관리사무소, 경비실, 맘스스테이션 등이 있으며, 내부 시설물(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음. 단, 어린이집에는 신발장, 작은도서관에는 책장, 종합보육센터에는 주방가구, 피트니스센터에는 러커 및 운동기구가 제공될 예정이며, 설계 및 제공되는 운동기구에 대해서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입주자들의 부담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현관, 발코니, 승강기 홀 등의 바닥 단차는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실이 내부에 있어 에어컨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음
- 세대 내 구조벽 외 조적벽체, 경량벽체 등이 시공될 예정임
- 거실 아트월 상단 타일면은 코킹등 별도 마감이 없으며, 주방벽 하부는 걸레받이가 미시공됨
- 욕실 출입문은 합성수지 재질이며, 욕실 천장재는 ABS 판넬로 시공되며 천장에 점검구 시공 예정임
- 각 단위세대 형별로 평면계획에 의거 주방가구 길이가 서로 상이함
- 발코니 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임
- 일부 발코니에는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 환기유닛 및 덕트, 선통통 등이 설치되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통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가구 헌지, 레일 등 가구공사용 하드웨어는 본 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에 설치되는 외부창호의 개폐 위치 및 방향은 본 공사 시 달라질 수 있음
- 세대 천장고는 2.3m로 시공오차에 의해 세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사업지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방가구, 강화합판마루 등의 자재는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음
-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 있는 벽, 바닥, 천장은 원활한 시공을 위해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세대 내 타일 및 아트월 나누기는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당해 지구는 개별난방지구로서 후연 발코니에 보일러가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으며, 발코니 사용에 협소할 수 있음
-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 배관 등이 설치되므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하며 침실 및 거실벽에 설치되는 온도조절기의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욕실은 습식욕실로 시공되며, 욕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평형별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욕실천장에 설치되는 욕실팬은 평형별로 설치위치가 다를 수 있음
- 비데는 부부욕실에 설치되며, 위치 변경을 원할 경우 수분양자가 입주 후 직접 변경하여야 함
- 세대 내 실내 환기는 기계환기방식(강제급기+강제배기)을 적용하며, 덕트 및 디퓨저는 거실과 각 침실 천장에 시공되며 작동 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방배기는 욕실에 배기팬이 설치되고 세대 레인지후드에는 덤퍼만 설치되는 공용배기방식을 적용함
- 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됨
- 수도꼭지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에는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음
- 최상층 세대의 경우 동력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소방관련 법(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재연설비가 설치된 아파트에는 일부 세대의 현관 출입문에 차압측정공이 설치됨
- 세대 내 기본설치 품목(읍선 선택시 해당 없음)인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은 거실 및 침실1에만 설치되며, 거실은 스탠드형, 침실1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설치됨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램플릿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층 승강기 홀에 설치되는 환기설비 및 계승기 가동으로 전기요금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 세대 무인경비 동작감지기는 1,2층 및 최상층의 경우 발코니 및 침실의 창호 측면부 각 1개소에 설치되며, 그 외층 동작감지기는 거실 창호 측면부 1개소에 설치됨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시공됨
- 승강로 및 권상기실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세대통신단자함은 신발장 뒷면에 설치됨
- 전기 세대분전반과 생활정보기 설치 위치에 따라 일부 형별에서는 현관 중문 설치가 제한될 수 있음
- 부부욕실에 설치되는 무선형 비상버튼을 누를 경우 윌패드, 관리실, 경비실에 경보음이 울리게 되어 있음
- 발코니와 실외기실 조영기구는 환기유닛 설치에 따라 벽부형 또는 천장형으로 설치됨
- 빨래건조대가 설치되는 발코니는 빨래건조대 자체조명이 리모콘으로 점·소등되며, 별도의 조영기구가 설치되지 않음
- 최상층 세대의 스피커는 벽부형으로 설치되며, 최상층을 제외한 기타층 세대는 천장형으로 설치됨
- 무선랜(AP) 초기비밀번호는 입주 시 안내 될 예정이며, 변경이 가능하고 비밀번호 분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용 전원설비가 지하주차장 1층에 급속충전기 2대, 완속충전기 29대, 지하주차장 2층에 완속충전기 29대 설치되어있으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4항 제5항 및 제16조)
- 홈네트워크시스템 세대단말기(WallPad10"LCD)는 게이트웨이와 통신하며 방범서비스(도어카메라, 현관자석감지기 및 동작감지기와 연동), 제어서비스(가스밸브차단, 거실 및 침실1 네트워크스위치조명, 난방온도, 디지털도어록), 단지공용기분서비(공동현관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차량출입통제시스템연동)를 제공함
- 생활정보기가 설치되며, 일괄소등(현관센서등 제외), 날씨정보제공, 승강기 호출 및 가스차단 기능을 함
- 식탁용 조영기구의 위치는 매입 다운라이트로 설치되며 위치이동은 불가능함

■ 일반 사항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음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음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 동일 주택형이라도 동호라인에 따라 전시세대 및 램플릿과 달리 평면이 대칭되어 시공됨
- 세대 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사업지구를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주택전시관, 램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함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함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물의 외관, 조경, 식재디테일은 인허가 및 실제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의 각 항목에 대한 설치는 최초 계약신청 접수분에 한해 가능하며, 계약 전 필히 확인이 필요함
- 근린생활시설(상가)과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도로(지하주차장 램프로함), 단지 주출입구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어린이놀이터 포함), 운동시설 등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특성 및 거주자의 생활환경 차이 등으로 층간, 세대 간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주택전시관, 램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음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잔금완납 포함)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함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주택전시관, 램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 중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사용품 등은 세대 연수를 위한 것으로 실제 설치되지 않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가 설치하는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은 실내구조(폭, 높이, 깊이 등) 및 형태에 따라 배치 불가능할 수 있음

■ 기타 지구여건 및 단지여건,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마감자재목록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등은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20.12.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의왕초평 A-3블록	한국토지주택공사 (129-82-10595)	㈜케이알산업 (126-81-05325)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자체감리

**5. 서류제출, 계약장소 및 홈페이지 안내**

서류제출, 계약장소	분양문의 및 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류 제출 : 2024.05.30.(목) ~ 2024.05.31.(금), 10:00 ~ 16:00 - 주 소 : LH 수원주택전시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49)</li> <li>■ 계약 체결 : 2024.06.27.(목), 10:00 ~ 16:00 - 주 소 : LH 수원주택전시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4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왕초평 A-3 상담전용 : 031-250-8181 (평일 10:00~17:00)</li> <li>■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09:00~18:00) * 공휴일과 토,일요일에는 전화상담이 불가능합니다.</li> <li>■ 사이버 견본주택 : <a href="http://www.lhuiwang-a3.co.kr">www.lhuiwang-a3.co.kr</a></li> </ul>

2024. 05. 13.

 **경 기 남 부 지 역 본 부**

